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3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4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“지역체육진흥협의회”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상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의 위임 조문 순서에 따라 현행 조례 조문 순서 정비
 -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5조 ⇒ 안 제12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
- 나.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,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위원의 임기, 해촉,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협의회 운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 ~ 제10조)
- 마.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문 정비 (안 제11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 (지역체육진흥협의회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3. 4. ~ 3. 24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3.3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3조의2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12조, 제11조,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협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구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

제4조(협회의 구성) ① 협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.

1. 마포구체육회의 회장
2.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3조의2)의 제목 “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”을 “(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8조”를 “법 제18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회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3조(중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제3조 및 제3조의2”를 “제11조 및 제12조”로 한다.

제14조(중전의 제5조)제1항 중 “제3조 및 제3조의2”를 “제11조 및 제1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(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2. 구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</u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(협회의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협의회는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협의회는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마포구체육회의 회장</u> <u>2.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<u>3.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체육 진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 (생 략)

제3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

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체육회 등” 이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대하여 변동이 수반되는 사

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

제11조(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) ① -

법 제18조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

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회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3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제11조 및 제12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제11조 및 제12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위임된 “체육진흥협의회 설치”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강종업 (☎3153-9862)